

I. 수질환경보전법 개정해설

1.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1995년 12월 29일 공포)

(1) 개정사유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환경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조치 규정을 두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때에 조례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제 8조 제3항)

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함. (제10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하던 배출부과금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청정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라.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하던 것을 민간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 제1항)

마. 유류유출 등에 의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자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방제조치와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징수 규정을 둠.

(제29조 제 1항 내지 제5항)

바. 수질오염사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 (제 29조의 2)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입지 확보를 위하여 도건설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도건설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함.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3) 주요내용검토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함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요건을 완화하였고, 배출부과금 부과제도에 있어서는 현행의 배출오염수질의 농도기준에서 앞으로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부과토록 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설치·운영자도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규제 완화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 개정법률은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해소하여 경제의 국정운영 최우선 시책에 부응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효과적

기획특집

인 방지책도 동시에 강구하는 개발과 보전의 양자쌍전의 효과가 기대됨.

가. 배출허용기준 (제8조)

제8조제4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허용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처럼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즉시 알려줌으로서 동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가중부담 등 종전과 다른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서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나. 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10조)

제10조제1항에서 대규모 오염물질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하고, 대통령이 정한 허가대상 시설이외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만으로도 그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같은 배출시설을 사전신고제로의 전환은 행정규제의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사전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보호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배출구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수질오염원의 실질적 관리와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신고대상 소규모 재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비록 소량에 불과하다 해도 이들 소규모 업체의 환경투자 부족과 환경관리능력의 결함을 고려하면 축적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 또는 토양오염 등의 우려가 염려되는 바, 이같은 우려가 해소되도록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자원·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 환경친화적기업경영

기업에 대한 규제위주로부터 탈피하여 자율적 환경대응 경영을 유도하고 WTO발족에 따른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는 국제적 경향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품설계로부터 원료조달·생산공정·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질환경관련 기업의 이같은 기업경영을 유도·권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배출부과금 감면혜택 등도 부여하여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는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법규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가동개시의 신고(제14조)

제14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경우, 당해 배출시설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그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도 그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 뿐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시점도 환경부장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정화조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함.

마. 부과금 처분 (제 20조의 2)

제 20조의 2에서 환경부장관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동 부과금의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3회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줌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줌이 바람직함.

바. 배출 등의 금지 (제29조)

제29조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

기획특집

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리거나, 자동차세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형사업장에서 토사를 유출시켜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즉시 제재하여 수질오염방지를 기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제57조 제5호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업무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행위에 대하여도 동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발하는 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1996년 7월 31일 공포)

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며 기타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1)허가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시설 및 특정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 등으로 정하고, 그 외의 배출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정함.

가. 허가대상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 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경우 취수시설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나. 설치신고대상 배출시설

- 허가대상 배출시설외의 경우
-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 변경허가 대상 배출시설

-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물리적 처리방법을 화학적 또는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거나 화학적 처리방법을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을 얻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함.

가.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초과부과금=종별부과금+처리부과금

기획특집

종별 부과금의 산정기준 (제15조제1항관련)

(금액단위 : 만원)

종별구분	1 종 사업장	2 종 사업장	3 종 사업장	4 종 사업장	5 종 사업장
기본 부과금	400	300	200	100	50

나. 처리부과금

처리부과금 =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 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다.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이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기준 이내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초과부과금계수준용)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초과부과금계수준용) × 지역별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18조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 고 기 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 부과기간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지역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제19조제2항관련)

청정 및 가지역	나 및 특례지역
1.5	1

처리부과금의 산정기준 (제15조 제3항 관련)

(금액단위 : 원)

오염물질	구분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미만	20%미만 40%미만	40%미만 80%미만	80%미만 100%미만	100%미만 200%미만	200%미만 300%미만	300%미만 400%미만	400%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특정 유해 물질	페놀류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시안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 화합물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포리크로리네이트트립페닐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기획특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제19조제2항관련)

초과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과율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부과계수	2.0	2.2	2.4	2.6	2.8

비고 :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배출농도-방류수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100

2.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적을 경우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유기물질 · 부유물질

○기본부과금 오염배출량 산정

· 예정배출량 (사업자 제출)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 배출량

(예정배출량×예정조업일수)

·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① 폐수배출량의 증감예측자료(배출시설 신·증설 또는 폐쇄나 가동일수의 조정등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② 배출농도의 증감예측자료(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이나 완료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확정배출량(사업자제출)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 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

(일일 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실조업일수)

·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① 배출구별 자기측정기록부 사본

② 조업일자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배출량의 산정(자가측정에 의함)

· 일일 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일일 평균 배출량-(방류수수질기준농도×일일 평균유량)

· 일일 평균 배출량=자가측정회수별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산÷자가 측정회수

·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자가측정시 배출농도×일일 유량

· 일일 평균유량=측정유량×일일 조업시간

라. 기본부과금의 감면

1)감면대상

· 5중사업장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감면범위

· 5중사업장 → 기본부과금 전액면제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하수도 사용료 전액면제

(3)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중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기간 및 아연을 추가하고 기본부과금 오염물질을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로 정함

(4)배출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5)가동개시 신고

사업자의 배출방지시설의 변경·신설에 따른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등으로 인한 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전의 가동개시 신고시 허가·신고 사항과부합여부의 확인(가동개시 신고확인)을 사업자가 위탁기관을 선택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기획특집

○위탁가능 기관

- ①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6)1997년 1월1일 부터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일반지역의 경우 1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및 2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 7,000㎡이상 2,000㎡미만)으로 규정하되 동사업장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감면

가.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시설 (1997. 1. 1 시행의 시설은 2000년 1. 1. 시행)

- 1)1종·2종사업장 단,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사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3종 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2) "3종 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사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4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3)폐수종말처리시설중 처리능력이 1일 700세제곱미터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경우에는 1일200세제곱미터로 한다)이상인 시설

나. 가본부과금의 감면

1). 2)항에 해당하는 경우(1997년부터 1999년까지 감면)

1종사업장	{	1997년 50% 감면
		1998년 30% 감면
		1999년 10% 감면
2·3(취)종사업장	{	1997년 70% 감면
		1998년 50% 감면
		1999년 30% 감면

*주 : 여기서 3종은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 설치된 3종사업장을 칭함

3.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96년 8월 12일 공포)

(1)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규정함

- 제출서류
 -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
 - 환경관리현황
 -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

(2)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오염도 검사방법 및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규정

가. 오염물질 배출량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 1)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 및 확정 배출량에 관한 확인을 위해 분기별 1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2)각호의 경우는 2월당 1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
 - ①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당해 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영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 ③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나. 시·도지사는 오염도 검사를 한 때는 검사 완료일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정함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관련)

가. 일반기준

1)과징금의 부과는 별표 20에서 정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과 관련된 행정기준에 명시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특집

2)과징금의 산정은 2. 개별기준의 과징금액에 영 제1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의 부과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규모	1종사업장	2종사업장	3종사업장	4종사업장	5종사업장
부과지수	1.2	1.1	1.0	0.9	0.8

나.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시설종류별 과징금액(만원)			
	1호시설	2호시설	3호시설	4호시설
1.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때	3,000	7,000	1,000	3,000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때	2,000	5,000	500	2,000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때	3,000	7,000	1,000	3,000
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때	3,000	7,000	1,000	3,000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때	2,000	5,000	500	2,000
2.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또는 운전미숙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00	5,000	500	2,000
나.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3,000	7,000	1,000	3,000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등을 한 때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3,000	7,000	1,000	3,000
나. 방지시설에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장치등을 설치 한 때	2,000	5,000	500	2,000
다. 오염물질 처리계통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계통을 변경하여 가동한 때	2,000	5,000	500	2,000
4.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7,000	1,000	3,000
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자가 이전명령기간내에 이전을 하지 아니한 때	3,000	7,000	1,000	3,000
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부작동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7,000	1,000	3,000
라.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000	3,000	200	1,000
5. 법 제10조 제2항의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200	1,000
6.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200	1,000
7.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사항을 위반한 때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횟수 또는 항목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200	1,000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를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200	1,000
8.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임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200	1,000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때	500	1,000	100	500
다. 환경관리인이 비상근하는 때	500	1,000	100	500
9.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1에 해당하여 취소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피해발생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때	6,000	9,000	3,000	6,000
10.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을 얻은 자가 부적정운영신고 없이 폐수등 액상오염물질을 의무로 배출한 때	2,000	5,000	500	2,000

비고 : 1.시설종류별 과징금액란의 1호시설 내지 4호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의 2제1항의 해당호의 시설을 말한다.